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

제정 2017. 10. 17 조례 제2882호 일부개정 2019. 3. 5 조례 제3037호(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건설공사"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.
- 2. "부실공사"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 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부실공사등급"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 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4. "벌점"이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안양시(직속기관,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) 또는「지방공기업법」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안양도시공사(이하"발주청"이라 한다)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. <개정 2019. 3. 5>
- 제4조(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)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1.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
 - 2.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
 - 3.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조(건설공사의 부실측정)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「건설기술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 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.
- 제6조(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)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, 민원제기,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 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- 제7조(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)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 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8조(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설치)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·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(이하 "전담부서"라 한다)를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하고, 전담부서의 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.
- 제9조(부실공사 신고·접수)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, 발견일시,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(이하 "신고인"이라 한다)은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(팩스),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.
 -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부실공사 신고 처리) ① 전담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 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,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(사진, 설계서 등)과 함께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

-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,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 관리와 우선 보수·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.
- 제11조(입찰참가 제한 등) 발주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시정명령 등)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시정지시 및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,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 - 1. 안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,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제5조제1 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요구한 경우
 - 2. 안양시의 감사 및 조사 결과,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
 - 3.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- 제13조(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) 발주청은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 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- 제14조(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부실공사방지위원 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
 - 2. 별표 2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 내에서의 포상금액 결정
 -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「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- 제15조(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 관리)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설계사·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6조(포상금 지급)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 주하는 공사비(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) 10억원 이상의 건설공

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

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,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-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사실을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, 포상금을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- 제17조(포상금 지급의 제한·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1.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 등급이 "해당없음"으로 판정된 경우
 - 2.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3. 공무원,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·시공자, 시공과 관련한 감독 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
 - 4.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
 - 5.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
 - 6.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
 - 7.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호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」제1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<2019. 3. 5 조례 제3037호,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>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 생략

제6조 생략

제7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 중 "안양시 시설관리공단"을 "안양도시공사"로 한다.

[별표 1]

부실공사의 등급 분류(제2조제3호 관련)

등급 구분	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벌점
1 등급	벌점 3점
2 등급	벌점 2점
3 등급	벌점 1점
해당없음	부실등급 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하여 부실공사로 볼 수 없는 경우

[별표 2]

<u>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</u>(제16조제4항 관련)

등 급 구 분	지 급 한 도 액
1 등급	100만원 이내
2 등급	50만원 이내
3 등급	30만원 이내

[별지 제1호서식]

부실공사 신고서										
신 고 자	성 명			생년·	월일					
	연락처			주	소					
신고공사	사업명			현장	위치					
	공 종			발생'	일자		년	월	일	
부실공사 내 용										
증명서류										
비 고										
「안양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										
신고인 (서명 또는 날인)								낙이)		
안양시장 귀하				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부실공사 근절 서약서

- 공사(용역)명:
- O 위 치:
- O 계 약 금 액:
- O 계약 년월일:
- O 착공 예정일:
- O 준공 예정일:

위 공사(용역)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, 모든 시방서, 품질 관리기준,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(용역)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부실공사(용역)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, 관 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은 물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도 감수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회사 대표 ○○○(인)

안양시장 귀하